



문서번호	주택과-5031
결재일자	2015.2.2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				2	2	-	9 9
	주무관	주택정비팀장	주택과장	도시관리국장			
	심경섭	김명환	박봉주	02/23 윤 호중			
	주택행정팀:	장 이큐	P환		•		
협	제개발2팀장 代이		진연				
조	조 주거재생팀장 오초		환				
	재개발1팀장 조영		ļ두				

2014년 항측판독결과 현장조사 계획



사 전 검토사항

::: 해당사항에 ☑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						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□ 공약(약속)사업□ 계속사업 ☑ 인센티브/공모사업 □						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● 구 민: 유☑() 무□ ● 전 문 가: 유☑() 무□ ● 이해당사자: 유☑() 무□						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□ 환경영향 □ 안 전 □ 유지비용 □ 바른 공공언어 □ 성 인 지 □ 취약계층 □ 장 애 인 □ 디 자 인 □ 갈등발생 요인 ☑						
타자원 활용	● 중앙부처: 유□() 무□ ● 서울시: 유□() 무□ ● 기업: 유□() 무□ ● 민간단체: 유□() 무□						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□ 보도자료 ☑ SDTV □ 성동뉴스레터 □ 성동구소식지 □ 기고 문 □ 전자행정서비스 □ SNS□ 기타(리플릿등) □ 없음 □						
 홍보제목: 2014년 항공사진판독결과 현장조사 실시 중점 홍보사항 우리구는 2014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항과 적법여부를 다음과 같이 조사 합니다 조사기간: 2015.3.10 ~ 2015.7.31 조사방법: 17개동 현지 출장하여 대상건축물 확인 조사 (항공사진 판독도면 및 처리조서, 약식현황도, 공무원증 휴대) 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							

2014년도 항측판독결과 현장조사 계획

2014년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에 대한 변동사유 및 적법 여부를 현지조사하여 강제철거 또는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위법건축물을 정 비하고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I. 관련법령

- 건축법 제78조(감독)
- 건축법 제80조(이행강제금)
-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3조(항공사진의 촬영)

II. 조사대상

관내 전지역 2014년도 항공촬영분 약 3,775건

Ⅲ. 추진일정

- 항측도 분류 및 직원교육 실시: 2015. 3. 9.
- 현장 조사: 2015. 3. 10. ~ 2015. 7. 31.
- 철거예정 조치: 2015. 8. 1. ~ 2015. 10. 31.까지
- 이행강제금: 2015. 11. 1. ~ 2015. 12. 31.까지 이행강제금 부과

Ⅳ. 세부 추진계획

1. 현장조사팀 구성(9명)

가. 총 괄: 주택과장

나. 조사자: 주택정비팀장외 직원 8명

다. 조사방법: 17개동 현지출장 확인조사 (항공사진판독 및 처리조서, 약식현황도, 공무원증 휴대)

2. 현장조사 실시 및 방법

- 가. 항공사진판독내용 현지조사 사전예고제 실시
 - 1) 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(관리인 등)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 단. 판독위치 및 소유자가 불명확시 현장에서 안내문 전달
 - ▶ 안내문 기재사항

조사자 소속, 직명, 성명, 조사예정일, 조사사항 등

- 2) 현지조사 실시전, 全 동사무소에 항공사진판독실시에 따른 협조 공문 발송(지번 파악 및 기타사항 확인 협조)
- 나. 조사내용: 위치, 소유자, 구조, 층수, 면적, 용도, 허가(신고)여부 및 위반여부 등
 - 1) 위 치: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축물의 위치를 지적도에 의거 법정동. 지번을 확인
 - 2) 건축주
 - 가) 사용자나 관리인이 아닌 소유권자 조사
 - 나) 소유권자가 불명확시 조사 당시 점유자
 - 다) 토지주와 건물주가 상이할 시 구분하여 조사
 - 3) 면적: 대상 건축물의 각층의(적법.위반 구분)바닥면적 합계
 - 4) 적법, 위반 행위 구분
 - 가) 적법: 건축허가(신고)서 및 건축물대장 등 관련서류 확인
 - 나) 위반: 위반된 층수와 연면적을 기재
 - 공사종별(무단증축, 무단개축, 무단용도변경 등)
 - 용도(주거, 사무실, 창고, 작업장, 화장실, 차고 등)
 - 5) 지역구분: 개발제한구역, 택지개발지구, 재개발구역,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, 공원, 녹지, 임야, 도로, 하천, 공공용지 등으로 분류

- 6) 부수시설(차광막, 비가리, 장독대, 연탄광 등)- 2000.9.25.이후 발생된 부수시설을 조사
- ※ 2000.9.24.이전 발생한 부수시설 단속제외 【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785호(2000.9.25.)부칙제3조】 『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단속계획에서 제외된 부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』
- 7) 비건물: 기초공사, 적치물, 영농(화훼용)비닐하우스(100㎡이하) 등
 - 비닐하우스 중 일부를 주거. 작업장. 공장 등으로 사용하거나
 - 폐버스, 콘테이너박스 등도 주거, 사무실, 창고, 간이음식점, 작업장 등 실제 건축물로 사용시 무허가건축물로 적출

※ 단속 제외대상

- 1) 기존무허가 건축물
 - 가) '81.12.31.현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(1,734건)
 - 나) '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
 - 다)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'81.12.31. 이전에 존립하였다 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
 - 라) '82.4.8.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㎡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'82년 제1차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'82.4.8.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 이 있는 무허가건물
- 2) 2000.9.25. 이전 발생 부수시설
 - 가)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폭 1M 이하의 차광막, 빗물받이, 비가리(챙), 대문, 물탱크전용 보호시설
 - 나) 장독대(높이 2.1M 미만이고 면적 10㎡ 이하로서 하부용도는 화장실, 창고 등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)
 - 다) 연탄광(기존주택에 부수된 면적 10㎡이하)

- 라) 굴뚝(가정용). 옥상 및 지하실 출입구 차면용 시설
- 마) 기계보호시설(공장 등 노천에 설치된 기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벽면이 없고 작업용도가 아닌 순수 보호시설)
- 바) 휴식 및 대기시설(공장, 사무실, 학교 등 대형건축물의 부수시설로 지상에 설치된 벽면이 없는 면적 30㎡이하)
- 사) 경비용 망루, 우물덮개 등의 공작물

3. 조사결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

가. 관계법령

- 1) 건축법
 - 가) 제11조(건축허가), 제14조(건축신고), 제20조(가설건축물)
 - 나) 제78조(감독), 제79조(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), 제80조(이행강제금)
 - 다) 제85조(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), 제109조~111조(벌칙. 과태료)
- 2) 건축법시행령: 제115조(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)
- 3) 건축법시행규칙: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직 제10조 제3항(개정 2003.11.21 건설교통부령 제377호)
 - 가) 대집행계고(시정명령)와 동시 건축물대장 위법표기
 - ① 계고내용
 - 대집행계고일(시정지시)와 동시 건축물대장 위법표기 (건축법 제79조, 행정대집행법 제3조)
 - 이행강제금부과 예고: 건축법 제80조
 - 필요시 전기, 전화, 수도, 도시가스 공급중지 예고 (건축법 제79조)
 -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(청문)

- ② 건축물대장 위법표기: 토지관리과 (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10조)
- ③ 행정대집행 통지는 반드시 등기우송 또는 사송(수령증 징취)

나) 행정대집행(강제철거)

- ① 행정대집행 대상
 - 축조가 진행중인 위법건축물: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강제철거 (건축법 제85조)
 - 극심한 민원을 야기하며 주민안전을 저해하는 위법건축물
 - 도시미관 및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건축물
- ② 제3자에게 대집행을 대행하게 하거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위법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징수 (행정대집행법 제6조)
- ③ 필요시 전기, 전화, 수도, 도시가스 공급중지요청: 건축법제79조 제2항
- ④ 위반건축물 표지 부착: 건축법 제79조 제4항

다) 이행강제금(과태료) 부과

- ① 부과근거
 - 건축법 제79조(위반건축물에 대한조치등),제80조(이행강제금), 제113조(과태료)
 -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), 제120조 (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)
 - 건축법시행규칙 제40조의2(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), 제44조(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)
 -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3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
- ② 부과대상: '92.6.1. 이후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 건물중 시정명령(대집행계고, 자진철거지시 등)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

③ 부과기준

- -'92.5.31.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축물 : 과태료부과
- '92.6.1. 이후에 발생된 무허가건축물 : 이행강제금 부과
- ※ 단, 연면적 85㎡ 미만의 순수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하며, 부과횟수는 총 5회로 하고, 건축허가(신고)절차는 결하였으나 현행 건축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은 추인 안내

라) 부과절차

- ① 청문: 대집행계고기한 내에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
- ② 부과통지: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서 발부
 - ※ 자진정비 미 이행시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 반복부과
 - ※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조치 : 세무1과
- 마) 이행강제금의산출: 건물시가표준액의 50/100 × 위반면적(㎡)
 - ※ 이행강제금은 부과당시 개별공시지가에의한 위법건축물의 구조, 용도, 건축연도에 따라 건물시가표준액이 결정되며, 건물시가표준액의 50/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산정함

바) 이의신청 처리

- ① 행정심판 소송처리: 행정심판법 제3조, 행정소송법 제12조
- ②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제기
-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·소송제기

나. 재판독 의뢰후 처리

1) 기존무허가건축물로 무허가건물대장에 누락된 건축물 가) '81.12.31. 이전 건립된 건축물

- 나) '82.4.8. 이전 건립된 건축물로 연면적이 85㎡이하인 주거용 건축물
- 다) 개발제한구역은 구역지정일('71.7.30, '72.8.25. 결정고시) 이전 건축물로 관리대장에 누락된 건축물
- 2) 신발생 무허가건축물로 적출(신고)되었으나 건축주가 기존 무허가 건물임을 주장하여 그 규명이 불확실한 건축물
- 3) 기타 공무수행이나 민원처리(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제외)를 위하여 정확한 발생시기나 점유상태 등을 규명해야할 건축물

※ 재판독 처리결과후 조치사항

- 누락된 건축물: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
- 위법건축물: 행정조치 실시

V. 행정사항

- 1. "정보공개에관한법률"에 의거 항측도 및 약식현황도 공개가능
 - 가.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제93조(지리정보의분류)에 의거, 비공개·공개 대상으로 분류하여 민원신청에 의한 처리
 - 나. 공개 및 배부시 사용용도의 제한,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명시
- 2. 현장조사 직원 사전 교육 실시('15.3.9.)
 - 가. 2014 항공사진 판독 및 정리지침
 - 나. 건축관련법규, 행정조치 및 허가절차
 - 다. 공무원행동강령 등 정신교육 실시
- 3. 현장조사 및 철거예정 현장확인 직원 출장여비
 - 총조사 및 처리 기간: '15.3.10. ~ '15.10.31.
 - ▶ 9명×10,000원×25일 = 2,200천원

(주택과, 주택건설 및 관리, 불법건축물단속, 항공사진 판독내용 현장조사, 여비, 국내여비)